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4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상정된 안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

(16시03분 개의)

○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5)

(16시04분)

○ 소위원장 강준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입니다.

지난 목요일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해외사업자입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수의 해외사업자들이 지정한 국내대리인들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내대리인 회사에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국내대리인 업무를 국내 정보주체로부터의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2호와 관련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2건은 시행일 관련해서 공포 후 1년, 공포 후 6개월이 있는데 지난 소위에서 부처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 저희 정부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강준현 예.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없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의견 없으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 박상혁 위원 먼저 기초적인 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현안과 관련되어서 필요성, 이런 현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복수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대리인을 여러 군데로, 예를 들어서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 이런 데다 쭉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가 실체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거의 실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상혁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페이퍼컴퍼니 형식으로만 돼 있고 이렇게 복수로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 박상혁 위원 그러면 하는 업무도 아예 없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여러 개를 대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리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국내 법인이 있는 업체가, 해외 글로벌 업체가 국내 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수의 대리인을 다시 지정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을 때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을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담이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적 현실에 맞추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상혁 위원 국내 주요 로펌도 많이 대리인으로 현황에 돼 있는데 이 로펌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그런 데도 있고 또 상당수가 로펌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법인이 있을 때는 로펌에 하지 말고 국내 법인을 그냥 국내대리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로펌들도 어떠한 업무도 전혀 취급하거나 역할을 하지 않나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아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연락 업무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법인이 있을 때는 국내 법인에서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물론 일반 제너럴한 그런 대리인보다는 국내 로펌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법인이 있는데 굳이 로펌으로 다시 이중 지정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상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과 강민국 간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제도 자체의 필요성들은 충분히 공감할 바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제도가 전자상거래법에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2소위에서 논의하려다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공감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이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통과되더라도 다음에는 전자상거래법을 꼭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왜냐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 꼭 강민국 간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李憲昇 위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좀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구글 같은 데는 국내 법인이 있지요, 구글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법인이 있는데도 왜 안 하고 주식회사 디에이전트 이런 데를 쓰시지요?

○**유동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동수 위원** 못 하게 하고 구글코리아가 직접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李憲昇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법으로, 약간 법을 그렇게……

○**李憲昇 위원** 그러면 제너럴에이전트 주식회사는 무슨 법인인데 10개 회사를 대신하고 있네, 10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이게 한 서너 개를 지금 대신하고 있어서…… 실제로 연락해 보면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국내대리인 전화를 해 보면 전화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것도 저희가 법 개정하게 된 하나의 이유도 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국내대리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현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개정안 보니까 본사에서 국내대리인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 규정했잖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김현정 위원** 실제로 관리감독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물론 법이 개정돼 봐야 알겠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락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정보…… 예를 들면 지금 딥시크처럼 연락을 바로, 조사 개시를 위해 사전 자료 협조가 왔을 때 그런 자료 협조가 잘되도록 하고 있는 거를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국내 법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본사와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개인정보 관리 이런 문제를 좀 본사에서 잘하도록, 그래서 실태점검은 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대로 관리감독하는지를 정부에서 어떻게 체크할 거냐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 남석**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해외사업자가 한 40여 개사 정도 되어 있고요. 우선은 자료제출받아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정기적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남석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이강일 위원님.

○ 이강일 위원 5페이지의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등’에 보면 이거 좀 꽤 채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개정안이 해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해야 될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과도해지지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법인이 있는데 새로 로펌이나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강일 위원 훨씬 더 부담이 되지요, 이런 쪽으로 보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그래서 그런 걸 없애 주기 때문에 약간 좀 과중한 표현이라 생각하고 있고, 새로 법인을 지정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중한 표현으로…… 어차피 국내대리인이 없는 데는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부담으로……

○ 이강일 위원 당연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고객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게 상도의상 맞는 거 아닙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맞습니다.

○ 이강일 위원 이건 좀 말이 안 돼 가지고, ‘한국지사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회사 내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도 말이 좀 꽤 채택해 가지고 기록에 남기려고 한마디 한 겁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부담이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 이강일 위원 알겠습니다.

○ 강민국 위원 저도 이강일 위원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너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나 등 해서 그것 일종의 내정 간섭이에요. 지금 빅테크가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개인정보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만 민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당연하게 해야 될 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로펌…… 로비를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강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앞으로 이런 거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추가로 작년에 정무위에서 소송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구글·메타 행정소송 1심에 승소해서 1000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저희가 계속 승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승원 위원 질의 조금만……

○ 소위원장 강준현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해외사업자가 지점을 두지 않고 국내대리인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해외사업자인 정보처리업자가 국내에 지점을 두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국내 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인을 하지 않고 로펌이나 페이퍼컴퍼니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번 딥시크처럼 아예 국내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사업 초기라서 아마 딥시크는 국내대리인을 선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를 위원님이 질문하시는지……

○**김승원 위원** 여기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이 정도의 해외사업자면 굉장히 매출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지점을 둘 것 같은데 지점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하지 않고 국내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지, 혹시 개인정보 처리 절차 위반이라든가 그런 위반 사안에 있어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실무적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범에서 굳이 강제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대리인을 로펌 같은 데로 두면 조금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그 업무에…… 사실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대리인을 안 쓰면 국내 법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도 좀 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업무 부담을 벗어나려는 그런 측면 플러스 로펌에서 하면 본인들이 좀 더 대응이 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김승원 위원** 해외사업자의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에 과태료도 있지만 형사처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로 누구를 처벌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본사,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주로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주로 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본사입니다, 본사.

○**김승원 위원**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국내대리인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본사를 상대로 합니다. 아까 메타고 구글이고 다 본사 상대로……

○**김승원 위원** 본사 구글코리아 해당 담당자를 하게 됐다.

그러면 국내대리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컨대 서로 소통의 편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만드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그러니까 약간 회피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책임을 분산 이런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대리인을 다른 데 두면 개인정보 책임이 그쪽으로 약간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희가 그냥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정보 처리업자가 본인의 지점을 활용하지 않고 국내대리인을 둔 이유가 아까 어떤 이유라고 그러셨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그러니까 국내 법인에 개인정보 책임자도 직접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내 법인은 다른 업무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면 본인들이 그 부분의 책임에 있어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승원 위원 일종의 아웃소싱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체도 없는 아웃소싱이지요, 실제로 보면.

○ 김승원 위원 국내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일률적입니까, 예를 들어 표준약관 비슷하게? 그건 어떻습니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법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 불만 구제와 피해 보상에 한정해서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김승원 위원 국내 정보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건 일률적이고 통일된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조정국장 남석 예, 그렇습니다.

○ 김승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오늘 법안을 가결하고 2소위 때 논의 못 했던 전자상거래법 강민국 간사님과 상의해서 속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강준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14인)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병기 김상훈 김승원 김현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현승 한창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